

「 」  
[ 2010. 3.19] [ 22075 , 2010. 3.15, ]

( ) 02 - 2023 - 7318

1 ( ) 「 」

2 ( ) 「 」 ( " " ) 2 2 5 " . < 2009.4.20 >

1. 「 」 19

2. 「 」 2 10 가

3. 「 」 29

4.

3 ( 가 ) 9 1 . . . (助産師)

가 ( " 가 " ) . . .

9 1 . . ( " " ) 5 1 3

가 가 1 가 ,

1 2 . < 2009.4.20 >

가 ( 1 2 ) .

4 ( 가 ) 1 가 ( " 가 " ) . < 2008.2.29, 2010.3.15 >

가 .

9 2 ( " 가 " )

. < 2008.2.29, 2010.3.15 >

1. 가 .

2. 가 . 가

가 가 ,

30

. < 2008.2.29, 2010.3.15 >

5 ( ) 가 , , ,

. < 2008.2.29, 2010.3.15 >

6 ( ) 가 가

---

7 ( 가 ) 가 가  
가 .  
가 가 .

8 ( ) 가 . < 2008.2.29, 2010.3.15 >  
1  
. < 2008.2.29, 2010.3.15 >

9 ( ) 가 가  
가 .

10 ( ) 11 1 " " ,  
" " . . .  
. < 2008.2.29, 2010.3.15 >  
11 1  
.  
11 1  
. < 2008.2.29, 2010.3.15 >

11 ( ) 25 28  
( " " )  
.  
1 .  
60 .

12 ( 가 ) 29 1 가  
. < 2008.2.29, 2010.3.15 >

- 1.
- 2.
- 3.
- 4.
- 5.
- 6.

13 ( ) 29 2 .

- 
- 1.
  - 2.
  - 3.
  - 4.
  - 5.
  - 6.
  - 7.
  - 8.

(選任)

14 ( 가 ) 29 3 가 가  
.< [2008.2.29, 2010.3.15](#)>

- 1.
- 2.
- 3.

15 ( ) 28 5 3 가  
.  
10 . , 가

16 ( ) 31 .

- 1.

(共濟)

- 2.

17 ( ) 가  
.< [2008.2.29, 2010.3.15](#)>

1 .

1. 가

- 2.
- 3.
- 4.
- 5.
- 6.
- 7.

30

.<

[2008.2.29, 2010.3.15](#)>

---

18 ( ) 41 200  
1 , 2 , 200 200  
1 , 2 가  
1 , ,

19 ( 가 ) 48 1 가  
( " • " ) . < 2008.2.29,  
2010.3.15 >

20 ( ) 33 2 4  
( 49 ) ,

21 ( 가 ) 48 3  
가 가  
4732 11  
가 . < 2008.2.29, 2010.3.15 >

22 ( ) 49 1 6 " "

1. (電子醫務記錄) .
2. .
3. .

23 ( ) 56 5  
. < 2008.12.3, 2010.1.27 >

1. 53 가
2. 가
3. 6
4. 가

---

5. (患部) .

6. (危害) 가

7. 가

8. 가 「  
」 2 . 「  
」 2 1 .

9. 57 1

1 .< 2008.2.29,  
2010.3.15>

24 ( ) 57 1 . .

< 2008.2.29, 2008.12.3, 2010.1.27, 2010.3.15>

1. 「 」 2 . 「  
」

2. 「 」 2 1 ,  
57 3

28 1 , .< 2008.2.29, 2010.3.15>

1. : , , , , ( ),

2. : , , , ( )

3. : , , , ( 가 )

2 2 가

.<  
2008.2.29, 2010.3.15>

25 ( ) . . ( " "

24 2 3

( " " ) .< 2008.2.29,

2010.3.15>

---

1 30 28 ( " "

2 가 15

3 30

26 ( ) 25 가  
25

(字句)

1

27 ( ) 25 26

28 ( )

1 1 10 20

(互選)

1. (職域) ( )

2.

3. 「 」 2 3

4. 가

5.

1 , 가 30

.< [2008.2.29, 2010.3.15](#)>

1

6

29 ( 가 가 ) 58 1 (病床)  
) 300 가 .< [2008.2.29, 2010.3.15](#)>

---

1 가 가 가 . 가  
1 가 가  
가 .< [2008.2.29, 2010.3.15](#)>

**30** ( 가 ) 29 1 가 .

- 1.
- 2.
3. .
- 4.

1 가  
. < [2008.2.29, 2010.3.15](#)>

29 1 가 ,  
. < [2008.2.29, 2010.3.15](#)>

**31** ( 가 ) 58 2 가

. < [2008.2.29, 2010.3.15](#)>

1. 「 」
2. 「 」 55 가
3. 가 가 가
4. 가

**32** ( ) 66 2

1. ( )
- 2.
- 3.
4. . (投藥) .
5. (專攻醫)
- 6.
- 7.

가 1

---

33 ( ) 70

( " " ) 1 1 7 15

.

,

. 1

,

.<

[2008.2.29, 2010.3.15>](#)

1. 가 가

2. , ,

3.

,

가

34 ( )

2

,

.

,

.

35 ( )

1

가

,

.

1. (回附)

2.

3.

36 ( ) 71

1

.

.< [2008.2.29,](#)

[2010.3.15>](#)

37 ( )

(補正)

1. 36

2. 가

3.

4.

(係屬)

5.

6.



38 ( )

37

. < 2008.2.29,

2010.3.15>

39 ( )

3 2

40 ( )

41 ( )

. < 2008.2.29, 2010.3.15>

42 ( ) 86 2

25

. < 2010.3.15>

86 2

「 」

. < 2010.3.15>

1. 27 2 1 2 ( )

2. 27 2 3

1 2

. < 2010.3.15>

[ 2009.4.20]

43 ( ) 67

1

. <

2008.2.29, 2009.4.20, 2010.3.15>

44 ( )

67

. < 2008.2.29, 2010.3.15>

. < 2008.2.29, 2010.3.15>

45 ( ) 92

2

1

2 1

가

, 가

92 1

3

. < 2010.3.15>

[ 2009.4.20]

< 22075 ,2010. 3.15 >

1 ( ) 2010 3 19 . < >

2 ( ) <121>

<122>

4 1 · 2 3 , 8 1 , 10 1 , 12 , 14  
 , 17 1 · 3 , 21 , 23 2 , 24 1 · 2  
 3 , 28 6 , 29 1 3 , 30 2 , 31 , 33 2  
 1 , 38 , 41 , 42 1 · 2 3 , 44 1 45 2  
 " 가 " " " .  
 5 , 8 1 2 , 10 3 , 19 , 21 , 25 1 , 30 3 , 36 , 41  
 , 42 3 , 43 44 2 " 가 " " " .

<123> <187>

3

[별 표] [별표 1로 이동 <2009.4.20>]

6	400 초과 ~ 500 이하	287,500
7	500 초과 ~ 600 이하	325,000
8	600 초과 ~ 700 이하	350,000
9	700 초과 ~ 800 이하	375,000
10	800 초과 ~ 900 이하	400,000
11	900 초과 ~ 1,000 이하	425,000
12	1,000 초과 ~ 2,000 이하	437,500
13	2,000 초과 ~ 3,000 이하	450,000
14	3,000 초과 ~ 4,000 이하	462,500
15	4,000 초과 ~ 5,000 이하	475,000
16	5,000 초과 ~ 6,000 이하	487,500
17	6,000 초과 ~ 7,000 이하	500,000
18	7,000 초과 ~ 8,000 이하	512,500
19	8,000 초과 ~ 9,000 이하	525,000
20	9,000 초과	537,500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나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 마.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 2) 의료법인,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 3) 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1	50 이하	75,000
2	50 초과 ~ 100 이하	112,500
3	100 초과 ~ 200 이하	150,000
4	200 초과 ~ 300 이하	187,500
5	300 초과 ~ 400 이하	225,000

[별표 2] <신설 2009.4.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 45조제 1항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과태료
1.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또는 안마사가 법 제30조제3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나. 조산사, 간호사 다.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법 제92조제3항제1호	70 50 20
2.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법 제33조제5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개설 장소 이전 및 중요 변경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2호	50 30
3. 의료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한 경우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1호	300 50
4.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사선 방호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2호	50 100 100

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30
마.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측정에 있어 선량한도를 넘은 사람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분실 등 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50
5.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마사가 법 제40조제1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3호	
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
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다.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100
6.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4호	100
7. 의료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5호	100
8.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3호	300
9. 의료법인이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4호	50
10.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00